

## 【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업무(의무사항) 】

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발급된 임시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(<http://www.fms.or.kr>, 이하 ‘FMS’)에 로그인 하신 후, 관리주체 정보를 등록하시기 바라며,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기존 아이디가 있는 관리주체의 경우 기존 아이디 사용

### □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업무

#### 1)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

- (유지관리계획의 제출)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 (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)
- (계획 변경 시)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
- (제출방법) FMS에 제출

#### 2) 설계도서등의 제출 : 지정·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FMS로 제출

#### 3) 정기안전점검의 실시

기 준		점검주기(시기)	비 고
안전등급에 따라	A·B·C 등급	반기에 1회 이상 (연2회)	제3종시설물로 지정·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실시(상반기, 하반기)
	D·E 등급	1년에 3회 이상 (연3회)	해빙기, 우기, 동절기

- (안전점검 결과보고) : 지정기관에 보고 (FMS로 제출)
- (점검자) 「시특법」에 따른 **책임기술자**
  - ※ 책임기술자란? ☞ 「시특법 시행령」 [별표5] 책임기술자의 자격
  -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**건축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** 또는 건축사이면서, 「시특법」에 따른 **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(35시간)**

#### 4) 시설물의 유지관리

- 시설물의 보수·보강 실시 등 유지관리
  - \* 보수보강 결과는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고
- 중대한 결함 발생한 경우 지정기관에 통보
- 중대한 결함이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·사용금지·철거,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 및 위험표지 설치